

증권대차중개서비스약관(대여자용)

제 1 조(목적) 이 약관은 유안타증권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가 고객에게 증권대여를 받아 이를 다른 차입자에게 대여하는 대차중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과 회사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차중개”란 회사가 대여자로부터 증권을 차입하여 차입자에게 증권을 대여하는 거래를 말한다.
2. “대차중개서비스계약”이란 대차중개를 위해 회사의 대차중개시스템을 이용하기로 하는 회사와 대여자간의 계약이다.
3. “대여자”란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차입자에게 증권을 대여하는 자를 말한다.
4. “차입자”란 대차중개를 통하여 회사가 차입한 증권을 차입하는(빌려오는) 자를 말한다.
5. “대여이용료”란 대여자가 일정기간 동안 증권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6. “개방형거래”란 거래종료일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고 거래당사자(대여자 또는 차입자) 중 어느 일방의 거래종료 통지에 의하여 확정되는 대차거래로 이 약관에 의한 대차거래는 개방형 거래이다.
7. “대여잔고”란 대차중개서비스 약정계좌에 대차중개가 실행된 증권을 말한다.
8. “대여체결”이란 대여자가 보유한 증권을 차입자가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차중개체결수량” 차입자의 차입신청에 따라 차입자에게 대여되는 증권의 총량을 말한다.
10. “대여풀”이란 대여자의 대차중개서비스 신청에 따라 대여가 가능하게 된 증권의 총집합을 말한다.
11. “대여가능수량”이란 대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여풀에 포함된 종목별 대여가능수량을 말하며, 차입신청수량이 대여가능수량보다 많은 경우 대차중개체결수량은 대여가능수량 이하로 제한된다.
12. “반환, 인도 또는 지급”의 대상은 증권의 경우에는 동일한 종류, 동일한 수량을 말하며, 현금의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을 말한다.

제 3 조(대차중개서비스의 대상증권) ① 대차중개서비스 대상 증권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1. 한국거래소 상장된 증권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주식예탁증권(DR)

② 제 1 항의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중에서 관리종목,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정리매매종목, 회사의 리스크 관리 기준 종목 등은 대여가능 종목에서 제외된다.

③ 제 2 항에 의해 대차중개서비스 대상 종목을 제한하는 경우 대여자에게 홈페이지 또는 HTS 를 통해 안내하도록 한다.

제 4 조(대상증권평가) 대차중개서비스 대상증권 평가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전일종가 기준으로 평

가를 한다.

제 5 조(대차중개서비스신청) ① 회사에 위탁매매계좌를 보유하고거나 개설한 고객은 계좌 별로 대차중개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계좌는 대차중개서비스신청이 제한된다.

1. 사고등록계좌
2. 반송등록계좌
3. 연계신용거래약정계좌
4. 미수금/미납금보유계좌
5. 실명미확인계좌(영업점계좌)
6. 랩약정계좌
7. 증거금미징수계좌

②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HTS(Home Trading System)등을 통하여 대차중개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다.

③ 고객이 대차중개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대여풀에 편입된다. 단 고객의 의사에 따라 보유증권 중 일부를 대여가능 종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6 조(대차중개서비스 신청의 효력) 대차중개서비스 신청 이후에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대차중개서비스 신청의 효력은 상실된다.

1. 대차중개서비스 신청을 철회한 경우
2. 대차중개서비스대상계좌를 폐쇄한 경우

제 7 조(대차중개서비스 대상계좌 제한) 회사는 대여자의 파산사유 및 대여자의 계좌에 가압류, 가처분, 질권이 설정되는 등 대차 중개가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대차중개서비스 신청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중개서비스 신청이 제한된 고객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 8 조(대차중개서비스 계약의 해지) 대여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HTS(Home Trading System) 등을 통하여 대차중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9 조(대차중개체결수량의 배정) ① 회사는 차입자의 차입 신청이 있는 경우 대여풀의 대여가능수량을 고려하여 대차중개체결수량을 결정한 후 대여자인 고객에게 다음 각 호에 내용 기준으로 대여자에게 대차중개체결수량을 배정한다.

1. 대여가능수량이 많은 순서로 체결수량을 우선 배정한다.
2. 대여가능수량이 같은 경우 대차중개서비스신청 대상 계좌 등록일이 빠른 순서로 우선하여 배정된다.
3. 대여가능수량 및 대차중개서비스 대상계좌 등록일이 동일한 경우 계좌 개설일이 빠른계좌가 우선하여 배정된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체결종목, 체결수량 등을 고객이 지정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③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HTS(Home Trading System)등을 통해 대차거래 체결내

역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대여체결일이 대차중개의 개시일이며, 대여잔고의 상환일이 대차중개의 종료일이 된다.

제 10 조(대여이용료지급) 회사는 대여체결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이용료 계산기간으로 산정하며, 계산된 대여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한다.

① 회사가 지급하는 대여이용료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일별대여이용료: [대여종목 전일종가 X 대여수량 X 대여이용료율] / 365 일

② 일별 대여이용료 한달 합산금액을 다음달 15 일 지급한다. 단 15 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대여이용료를 지급한다. 이때 원미만은 절사한다.

③ 회사는 대여자에게 지급할 대여이용료 등을 홈페이지 및 HTS 에 게시한다.

④ 대여자의 주식 대여로 발생하는 대여이용료는 기타소득으로 인식됨에 따라 회사는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한다.

제 11 조(중도상환) ① 대여자는 대여 체결종목의 중도상환을 회사에 요청 할 수 있고 그 요청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여자가 대여 회수신청 하는 방법

2. 대여자가 대여주식을 매도하는 방법

3. 대여자가 계좌별 대차중개거래서비스 약정을 해지를 하는 방법

② 대여자가 대여체결증권을 대여기간 중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이 완료된 때의 4 영업일까지 해당 계좌 내 해당 종목을 대여풀에서 제외한다.

제 12 조(회사의 담보관리) ① 회사는 대여자로부터 회사의 계산으로 차입한 증권을 차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회사와 차입자가 합의한 비율(이하 담보비율이라고 한다)이상의 담보를 차입자로부터 받는다.

② 회사가 대여자로부터 회사의 계산으로 차입한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증권금융의 중개에 의하여 차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회사와 차입자간의 대차거래에 필요한 사항들은 중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증권금융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 13 조(회사의 상환의무 등) ① 회사는 차입자를 대신하여 대여자에게 상환의무를 지고,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체결종목과 동종, 동량의 증권을 시장을 통하여 매입하여 대여이용료 및 권리 등과 함께 대여자에게 인도하거나 지급한다

② 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차입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중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이 규정하는 담보물 처분 등의 절차에 따라 중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이 회사를 대신해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등에 대한 이행책임을 진다.

제 14 조(권리의 처리) ① 회사는 대여잔고에서 발생하는 배당, 증자 등의 권리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여자에게 제공한다.

1. 현금배당 및 단주대금 등: 회사는 배당금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에 대여자에게 지급한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후 대여자에게 지급한다.

2. 주식배당 및 무상주: 회사는 신주의 상장일에 해당 대차거래와 동일한 조건의 대차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처리한다.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상장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 반환한다

단, 대여자가 동의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신주인수권증서: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에 차입자에게 상환청구하며, 상환청구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 대여자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지급한다. 다만 대여자가 청약의사 표시를 하고 청약일에 청약대금을 회사에 지급한 경우, 회사는 신주의 상장일에 해당 대차 거래와 동일한 조건의 대차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대여자가 동의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4. 감자 및 합병 등: 해당주식의 상장일에 대여자에게 지급하며, 그 외 권리는 한국결제예탁원 규정에 따른다.

② 매수청구 및 의결권 경우 체결종목에 대해서는 대여자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 따라서 대여자가 의결권을 행사 할 경우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 3 영업일 이전에 대여회수신청을 하고, 매수청구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 공시 익영업일 오전까지 대여 회수신청 해야 한다.

제 15 조(대차거래 업무정지)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산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차중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대차중개업무를 정지한 후 그 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개 후 이 사실을 대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6 조(통보의 방법 등)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대여발생, 상환, 대여이용료 지급 등을 통지하며, 대여자가 대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신의 변경사항에 대한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17 조(분쟁조정) 대여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해결을 요청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제 18 조(비밀준수 의무) 회사의 임직원은 대차중개서비스의 관련하여 자신이 얻은 고객정보 및 업무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19 조(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대여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대여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기존 대여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대여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대여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대여자는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이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하는 것을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두거나 게시하여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PC 화면, 그 밖에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에 게시하여 대여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0 조(약관의 적용) ① 약관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회사와 고객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 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 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 21 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66 조의 2 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 · 무선 · 화상통신 ·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 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 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8 월 1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년 1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5 년 2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5 년 8 월 25 일부터 시행합니다.



<별첨>

- (1) 제 10 조의 대여이용료 지급기준율은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myasset.com > बैं킹/계좌/대출 > 신용/대출/주식대여 > 주식대여 > 주식대여서비스란? > 상품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